

태아보험 태아등재 시 구비 서류

구분	구 비 서 류	작성자
기본서류(공통) (우체국 서식)	◆ 보험계약사항 변경(정정) 청구서	신청자 <u>친권자 2인 또는 1인이</u> 반드시 작성 제출
	◆ 개인(신용)정보 동의서(태아등재용)	
	◆ 친권자 단독 서명확인서	

* 태아등재 신청 시 【기본서류(공통) + 아래 해당 구비서류】 제출하여 처리



구분	구 비 서 류
친권자 내방	2인 ① 친권자 2인 실명확인증표 ② [등재자녀 기준]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(또는 주민등록등본)(주민번호 모두 확인 必) ③ 계약자와 방문인 관계서류(계약자와 동일인인 경우 필요 없음)
	1인 ① 친권자 1인 실명확인증표 ② [등재자녀 기준]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(또는 주민등록등본)(주민번호 모두 확인 必) ③ 계약자와 방문인 관계서류(계약자와 동일인인 경우 필요 없음)
계약자 내방 시	① 계약자 실명확인증표 ② 친권자(1인) 실명확인증표 사본 ③ [등재자녀 기준]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(또는 주민등록등본)(주민번호 모두 확인 必)
유지관리자 내방 시	① 계약자 실명확인증표 사본 ② 친권자(1인) 실명확인증표 사본 ③ [등재자녀 기준]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(또는 주민등록등본)(주민번호 모두 확인 必)

* 대한민국 엄마보험에 한하여 태아등재 및 수익자 변경 : 【기본서류(공통) + 아래 해당 구비서류】

대한민국 엄마보험 수익자 변경 (산모→자녀)	• 대한민국엄마보험(특약가입 건) : 태아등재 시 동일서류로 산모→자녀 수익자 변경을 동시에 일괄 처리
참고사항	(기본서류 제출 시) 친권자가 내방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는 친권자가 자필로 작성한 【친권자 단독 서명확인서】, 【개인(신용) 정보 동의서】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. ※ 모든 증명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(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)만 유효